

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말소 예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6조의6(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)제4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말소하고자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1(가맹점의 등록 말소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10. 2.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제 목: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말소
2. 예고기간: 2026.10.2.(금) ~ 2026.10.22.(목)
3. 법적근거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6조의6제4항
4. 예고내용: 유효기간 만료(2026.10.18.) 예정이거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가맹점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말소
(말소 예정일: 2026.10.23.)
5. 대 상: 붙임 참조
 - * 유효기간 만료 예정 가맹점이 신청기간 내 등록 갱신을 신청한 경우 말소 대상에서 제외
6. 고지사항: 본 예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
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
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 대상에 대하여 말소
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.
7. 문 의 처: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(044-204-7900),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(042-363-6856)

붙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말소 대상 1부.